제 101 회 **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** 제 6 호(부록)

거창군의회사무과

목 차

1. 채석장관리대책 ····· 2 면
2. 거창읍시가지진입도로정비사업추진현황 ····· 10 면
3. 산지관리법제정으로달라지는제도 ····· 12 면

2003. 8. 26
산업건설위원회

당면현안사항 추진사항 보고

○ 채석장 관리대책
  - 화신개발, 대봉석재, 동남석재 복구관련사항
○ 거창읍 시가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
○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

산 림 과
(산림담당)

채석장 복구관련 현황

(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)

▣ 화신개발

□ 채석장 허가현황

○ 위　　치 : 주상면 내오리 산30번지외 2필지

○ 허가면적 : 34,299㎡(10,375평)

○ 종별 및 수량 : 화강암 171,268㎥

○ 허가기간 : '94. 9. 2 ~ '97. 8. 25

○ 수허가자 : 화신개발(주) 대표이사 이갑수

○ 적지복구비 : 113,327천원(보증보험증권)

□ 복구관련 추진사항

○ '98. 2. 25 허가 취소 조치

- 피허가자 : 화신개발(주) 이갑수
- 취소이유 : 채석허가 기간연장에 따른 적지복구비 미예치
- 당초 허가시 제출된 인허가보증보험기간 만료 : '98. 2. 25

※ 채석허가를 받은자가 산림법 제90조의4 및 산림보호지도 명령 제3조제1항(허가조건위반 : 적지복구비 미예치)을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'98. 9. 29 채석허가 취소에 따른 적지복구 명령 : 화신개발(주)

- 위 허가 취소지에 대한 적지복구설계서를 '98. 10. 15일한 제출
- 위 기간내 미제출시 관련 규정에 의거 대집행 조치

(산림청 예규 제447호)

○ '98. 10. 31 보험금 지급 청구 : 거창군 ⇒ 서울보증보험(주)

- 화신개발(주)의 자체복구 미이행으로 대집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
- 보험금액 : 113,327천원

○ 보험금 지급불가 회신 : 서울보증보험(주) ⇒ 거창군

-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(박진환)의 이의 제기로 지급 불가함을 통보
- 이의제기사유 : 보증인은 화신개발(주)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새로운 수허가자(명의변경 신청자)인 거성석재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이 없음.
  따라서, 화성석재에 대하여는 적지복구의 책임이 없음.

□ 보험금 청구관련 쟁송현황

가. 보험금 지급에 따른 가처분 신청

○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 : '99. 4. 10 보증인 박진환

- 보험금액 : 113,327천원
- 결　　과 : 청구인용(공탁조치)

○ 보증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: 2000. 11. 8 거창군

- 결　　과 : 거창군 승소
- 가처분 결정을 취소 함.

※ 보험금 지급 가처분 신청에 따른 거창군의 승소로 적지복구를 재청구하였으나 지급 불가 회신
(서울보증보험(주) ⇒ 거창군)

나. 보험금 지급에 따른 가처분 신청

○ 관할법원 및 피고 : 대구지방법원, 서울보증보험(주)

○ 판결선고 : 2002. 1. 31 ⇒ 거창군 패소

○ 판결요지

- 수허가자의 명의변경(화신개발(주) ⇒ 거성석재)으로 거성석재가 화신개발(주)의 적지복구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,
- 수허가자 명의변경에 의하여 거성석재가 적지복구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가 이를 동의하거나, 본 건 보증보험 증권이 양도양수 가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
-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인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1심 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: 2002. 2. 26 거창군

○ 관할법원 및 피고 : 대구고등법원, 서울보증보험(주)

○ 판결선고 : 2002. 10. 2 거창군 패소

○ 판결이유 : 1심 소송의 판결 내용을 재판부에서 인용함으로서 청구를 기각함.

라. 2심 패소에 따른 상고심 제기 : 2002. 10. 23 거창군

○ 판결선고 : 2003. 2. 27 거창군 패소(소송 종결)

○ 판결이유 : 상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.

바. 동 임지의 적지복구검토 : 2003. 5. 2일부터

□ 원인자 복구신청

○ 2003. 6.19 ┌ 면 적 : 0.7ha
└ 신청자 : 대구시.달성군.화천읍.천내리 850번지 이현철

2003. 7. 9 : 취하원 접수 및 신고수리

○ 2003. 7. 3 ┌ 면 적 : 0.7ha
└ 신청자 : 거창.주상.내오 산41번지 화신개발(주) 박영옥

2003. 7. 9 : 취하원 접수 및 신고수리

○ 2003. 7. 9 ┌ 면 적 : 0.9ha
├ 복 구 비 : 48,829천원
├ 복구내용 ┌ 폐석반출 : 29,000㎥
| ├ 폐석기간 : 1년 6개월 소요
| └ 폐석 반출후 폐석 반출지 복구
└ 신 청 자 : 거창.주상.내오 산41번지 화신개발(주) 박영옥

○ 2003. 7.19 : 채석허가 취소지 복구설계 및 폐석반출 승인 요청 반려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제점

- 안정된 임지의 재훼손하였을 경우 민원발생 요인이 상존
  - 환경적인 요인
  - 채권자의 민원

○ 대 책

- 훼손임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적지복구설계를 하여 군에서 복구 추진

▣ 대봉석재

□ 허가사항

○ 위　　치 :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산27-1

○ 허가면적 : 19,005㎡

○ 기　　간 : 1997. 12. 23 ~ 2002. 12. 22

○ 복 구 비 : 120,260천원

○ 수허가자 : 거창읍 대동리 599-1 최창태

□ 복구관련 추진사항

○ 2002. 7. 4 : 채석허가 취소 및 채석허가 취소지 복구설계서 제출 통보(사유 : 추가복구비 미예치)

○ 2002. 7. 4 : 추가복구비 예치통보에 따른 이의 신청(최창태)

○ 2002. 7. 9 : 이의신청 회신

○ 2002. 7.31 : 복구설계서 제출 연기 요청(최창태)

○ 2002. 8. 9 : 복구설계 승인 신청(최창태)

○ 2002. 8.13 : 채석허가 취소지 보구명령 및 설계서 승인(군)

○ 2002. 8.23 : 복구 착수계 제출(최창태)

○ 2002.10.23 : 채석허가 취소지 대행복구 계고(군)

○ 2002.11. 1 : 〃 〃 (2차)

○ 2003. 1.30 : 〃 〃 (3차)

○ 2003. 5. 1 : 채석허가 취소지 복구비(보험금)청구(군→보증보험회사)

○ 2003. 5. 6 : 착수계 제출(최창태)

○ 2003. 6. 3 : 복구비 청구유예 요청(최창태)

○ 2003. 6.19 : 채석허가 취소지 복구 준공 신청(최창태)

○ 2003. 7. 5 ┌ 채석허가 취소임지 하자보증금 예치 및 복구준공 처리
　　　　　└ 적지복구비 3,895천원 예치(하자보식)

※ 적지복구 공종

공종	전석 쌓기	전석 운반	초류종 자살포	단풍 나무	은행 나무	오리 나무	토사 측구	면 고르기
수량	750㎡	560㎡	4,500㎡	700본	200본	1,000본	285m	2,500㎡

○ 2003. 7.18 : 채석장 복구지 하자보식 통보(군)

○ 2003. 7.25 : 〃 〃 촉구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제점

- 채석허가 취소지 복구공사 완료 후 계속된 강우로 복구지내 토사가 유실됨으로서 일부 전석쌓기 공종이 파손 및 식재목이 유실 고사되었음.

○ 대 책

- 복구 원인자에게 2003. 8. 31일까지 하자 보수토록 통보하였으며, 동기간내 하자 보수되지 않을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예치된 하자 보증금으로 대행 하자보수 조치하겠음.

▣ 동남석재

□ 허가사항

○ 위　　치 : 주상면 내오리 산65번지외 4필지
○ 허가면적 : 81,688㎡(3.0ha 복구완료, 5.0ha 복구중)
○ 기　　간 : 1997. 11. 1 ~ 2002. 10. 31
○ 복 구 비 : 516,911천원
○ 수허가자 : 주상면 내오리 산64 동남석재 김한호

□ 복구관련 추진사항

○ 2002. 8. 5 : 채석허가 취소 및 복구설계서 제출통보
(취소사유 : 추가복구비 미예치)
○ 2002. 8.30 :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
○ 2002. 9. 5 : 채석허가 취소지 복구명령 및 설계서 승인
○ 2002.10.30 : 복구기간 연기신청(김한호)
○ 2002.11.20 : 〃 (김한호)
○ 2002.11.28 : 복구기간 연기신청에 대한 회신 및 대행복구 계고
○ 2003. 1.29 : 복구설계 변경 승인 신청(김한호)
○ 2003. 3. 5 : 복구설계 변경 승인(군)
○ 2003. 3.19 : 복구기간 연장 신청(전석 79,870㎥)
○ 2003. 4. 8 : 복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회시
○ 2003. 5.20 : 채석허가지 복구기간 연장
○ 2003. 5.20 : 2004. 4. 30일까지 적지복구 완료토록 조치
○ 2004. 6.30 : 적지복구비 예치 516,911천원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제점

- 동남석재 채석허가지 복구작업장에는 전석(폐석)반출로 인한 운반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일부 있음.

○ 대 책

- 앞으로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
-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.

거창읍 진입로조경사업 추진

○ 생활주변 큰나무 심기 위주로『푸른 거창 조성』조기 마무리
○ 도시 녹지면적 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푸른 거창 조성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03. 3 ~ 12. 30
○ 사 업 량 : 소나무외7종 21,261본(원추리외2종 22,150본)
○ 사 업 비 : 910백만원(도 273, 군 637)
○ 세부사업내용

• 노　　견
- 교　목 : 느티나무 207본, 소나무(조형) 30본, 감나무 5본
- 관　목 : 연산홍 5,000본, 겹철쭉 3,500, 자산홍 2,000주, 조팝나무 1,000본, 쥐똥나무1,000본,
- 초화류 : 원추리 500본, 구절초 500본, 매발톱꽃 500, 잔디 4,400㎡
- 시설공 : 녹지경계석 2,057m

• 중앙분리대
- 교　목 : 느티나무 133본,
- 관　목 : 연산홍 3,900본, 겹철쭉 2,130, 자산홍 1,000주,
- 초화류 : 잔디 2,200㎡
- 시설공 : 도로경계석 2,178m

● 교 통 섬

- 교　목 : 소나무(장송형) 6본
- 관　목 : 연산홍 500본,겹철쭉560,자산홍200주,
- 초화류 : 원추리 200본,구절초 150본,매발톱꽃300본

□ 그동안 추진현황

○ 군수지시사항 : 2003. 2. 3 간부회의시

○ 거창읍진입로 조성계획보고 : 2003. 2. 10

○ 진주산업대학교 조경과 강호철 자문 : 2003. 2. 14

○ 거창읍진입로 조경실시설계 용역시행 건의 : 2003. 2. 28

○ 거창읍진입로 조경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: 2003. 5. 6

○ 거창읍 진입로조경용역완료 : 2003. 7. 5

○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 도로점용허가 협의중

- 허가신청
-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→ 거창경찰서 교통관계 협의

○ 현장설명 : 2003. 8. 21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방문(산림담당외1)

□ 문 제 점

○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방문결과 중앙분리대 설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

(서울우유진입 및 고속도로 진·출입에 따른 교통안전 위험)

□ 향후계획

○ 관리청 방문 및 현장 설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

거창읍 진입로 조경사업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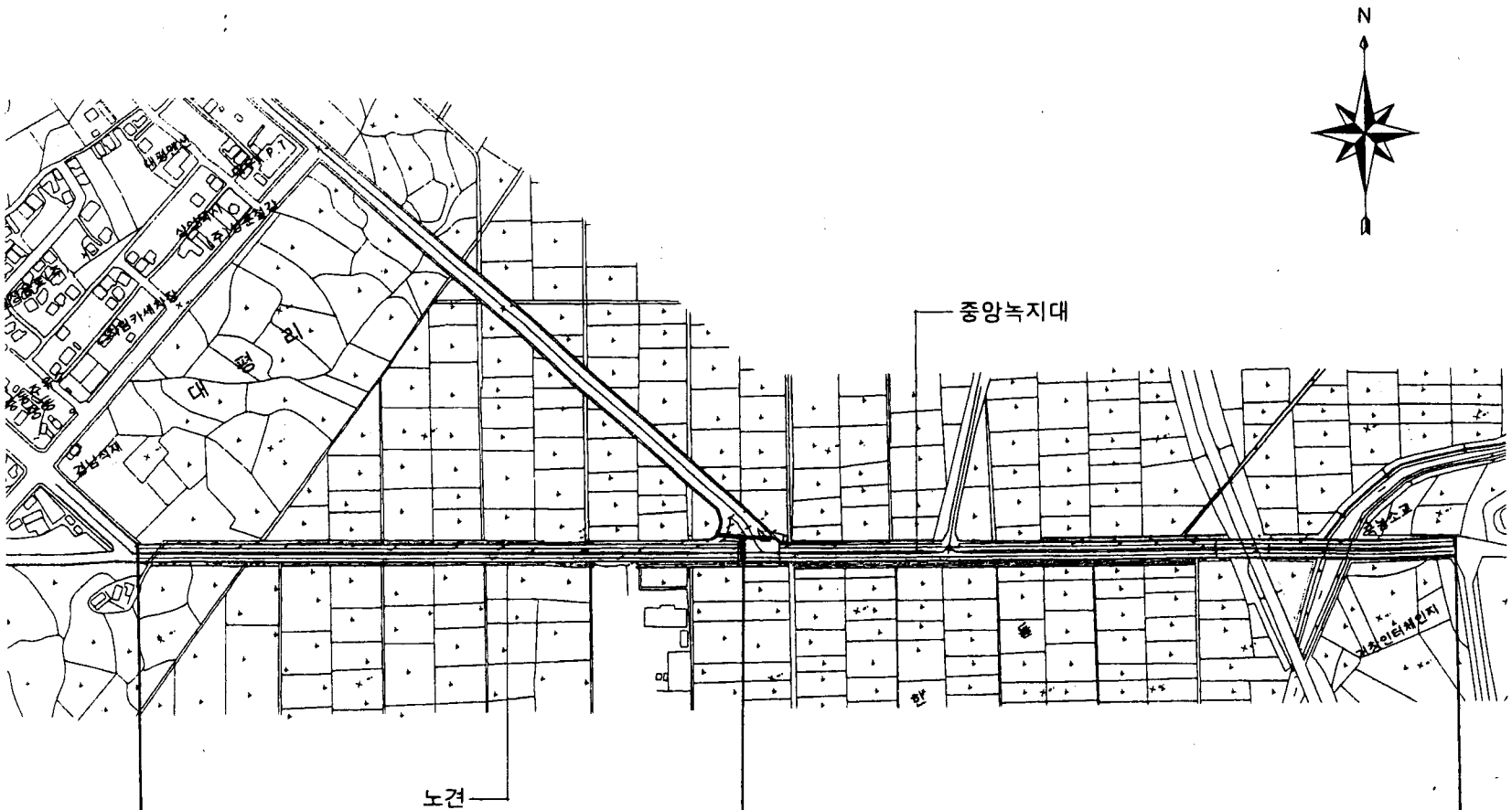

거창읍 진입로 조경사업
실시설계

1/2500
1/5000

선형계획도

□□A-□□2

산 림 관 계 법 령

1. 산림기본법
2. 산림법
3. 산지관리법
4.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5.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6. 사방사업법
7.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
8. 산림조합법
9. 입목에 관한 법률

□ 산림기본법

○ 제 정 : 2001. 5. 24 법률 제 6477호

○ 구 성 : 7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시책의 기본방향(산림의 합리적 보전·이용, 산림기능증진, 임업·산촌의 육성 등)
- 산림의 보전 및 이용(지속 가능한 산림경영, 자연친화적인 산림이용, 산림재해 등)

-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(산림자원조성, 공익기능증진, 수목원,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창달, 도시산림조성·관리 등)
- 임업의 육성(경영기반 조성,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, 임산물 품질인증, 임업기술진흥, 산림정보화 촉진, 임업관련 단체 육성 등)
-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(국유림 관리, 산촌진흥지역 지정·수립, 도시·산촌교류 등)

□ 산 림 법

○ 제 정 : 1961. 12. 27 법률 제881호 (총 31회 개정)

○ 구 성 : 8장 126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·육성·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(영림계획, 임도의 설치등, 보전임지의 지정·해제, 자연휴양림의 지정·조성, 조림장려, 종묘·채종림 관리, 임산물의 이용·감독)
- 보안림·산림유전자원보호림(보안림의 지정·해제 등,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·해제)
- 국유림 관리(국유림의 대부·사용허가·매각 사후관리 등)
- 산림의 보호(산림의 형질변경 등,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)
-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(녹색자금설치, 복권발행, 자금지원 등)
- 보 칙(산림보험, 기술연구개발, 산림벌칙 등)

□ 산지관리법

○ 제 정 : 2002. 12. 30 법률 제6841호

○ 구 성 : 6장 57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산지의 보전(보전산지의 지정·해제, 행위제한, 산지전용허가·신고, 산지관리위원회 설치 등)
- 채석·토사채취등(채석허가, 토사채취,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등)
- 재해방지 및 복구 (재해방지, 복구비 예치, 복구관련 승인 대집행 등)
- 보칙 및 벌칙 (타인토지 출입등, 청문, 수수료, 채석·토사채취 관련 벌칙 등)

□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○ 제 정 : 제정 2002. 12. 30 법률 제6841호

○ 구 성 : 5장 28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임업의 구조개선(소유·경영·유통구조개선, 산림복합경영, 임업후계자·독림가 등의 육성,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등)

- 임업진흥권역의 지정(임업진흥권역의 지정·해제 등)
- 산촌의 진흥(산촌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)
- 보 칙(청문, 권한의 위임·위탁, 벌칙 등)

□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○ 제 정 : 2001. 3. 28 법률 6446호

○ 구 성 : 4장 23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수목원의 조성·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수목원의 조성 계획·승인, 수목원의 등록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
□ 사방사업법

○ 제 정 : 1962. 1. 15 법률 977호

○ 구 성 : 28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사방사업 전반(사방사업 설계·시공 및 사방지 지정·해제 등)에 관한 사항

□ 산림조합법

○ 제 정 : 1980. 1. 4 법률 3231호

○ 구 성 : 5장 134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산림조합 전반에 관한 사항

□ 입목에 관한 법률

○ 제 정 : 1973. 2. 6 법률 2484호

○ 구 성 : 23조 부칙으로 구성됨

○ 목 적 : 입목등기에 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입목 등기의 전반에 관한 사항

□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

○ 제 정 : 1963. 2. 9 법률 1267호

○ 구 성 : 10조 부칙

○ 목 적 :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·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.

☞ 주요내용 요약

-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